

#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위원회 운영규정

[시행 2018. 5. 4.] [제2018-7호, 2018. 5. 4. 일부개정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운영,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의 지급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대학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탁기관 및 기부자가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내 장학금 : 대학회계 등 대학과 대학 구성원이 확보한 재원으로 집행하는 장학금  
<개정 2017.07.18.>
2. 교외 장학금 : 정부, 사설장학 재단, 단체 등의 외부기관 또는 개인기부자가 선발대상과 지급규모 등을 특정하여 대학으로 위탁 또는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<개정 2017.07.18.>

**제4조(구성)** 위원회는 총장, 종합인력개발센터장, 교무부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각 학과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5조(임원)**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장학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07.18.>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4.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

**제7조(의결)**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**제8조(장학생추천)** ① 종합인력개발센터는 매학기 초 장학금의 유형과 장학생수 및 수혜자격 요건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② 각 학과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장학생추천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종합인력개발센터에 제출한다.

**제9조(장학생 선발 및 관리)** ① 장학생의 최종선발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- ②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를 장학금 지급대장 [별지 제2호 서식]에 등재하고 장학금 지급통지서 및 장학증서 [별지 제3호 서식]를 교부한다.

**제10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)** ① 교내 장학금의 종류와 선발대상은 [별표1]과 같으며 세 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교외장학금 수혜자 선발에서는 기탁단체 또는 기부자가 정한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되, 특별한 기준이 없거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는 대학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**제11조(수혜자 의무)** 장학금 수혜학생은 수혜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, 수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환)**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미등록 휴학, 자퇴, 제적 처분을 받았을 때
2.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4. 기일 내 등록을 필하지 아니했을 때
5. 기타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

② 종합인력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반환조치를 한 경우, 장학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중복지원 및 등록금 범위 초과금지)** ① 매 학기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교외장학금으로 기탁기관에서 지급금액을 특정하여 1회에 지급할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[별표 1] 교내장학 종류에서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교외기관에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복지원을 허용한다.

<전문개정 2017.7.18.>

**제14조(장학기금의 재원)** ① 교내장학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등록금 수입
2. 경상남도 출연금
3. 기타 대학 또는 대학구성원이 조성한 장학금
4. 기타 적립금

② 교외장학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정부지원 장학금
2. 선발대상과 지급규모가 특정된 사실 장학재단, 외부기관 또는 기타 단체로부터의 기부금
3. 불특정 다수 또는 개인의 기부금

③ 유가증권 및 부동산이 기탁된 경우 현금화하여 장학금으로 관리하되 기탁자의 명시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 .

④ 조성된 장학금은 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이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 <전문개정 2017.07.18.>

**제15조(장학금의 집행 및 관리)** ① 장학금의 집행은 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로 집행하는

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외장학금 중 대상자와 금액을 지정하여 대학으로 세입되는 일시적 보관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07.18.>

② 장학금은 매학년 초에 전년도 장학금 집행결산과 당해연도 장학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07.18.>

<전문개정 2017.7.18.>

**제16조 삭제** <2017.07.18.>

**제17조 삭제** <2017.07.18.>

**부칙 <1996. 3. 2.>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1998. 2. 1.>**

이 규정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1999. 10. 26.>**

이 규정은 199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0. 1. 8.>**

이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0. 6. 7.>**

이 규정은 2000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1. 1. 20.>**

이 규정은 200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2. 9. 25.>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4. 7. 19.>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05. 1. 19.>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2. 25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5. 2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6. 20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4. 14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7. 3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2. 25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5. 14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4. 6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 11. 29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7. 11.>

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12. 12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3. 19.>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2. 25.>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7. 11.>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8. 11.>

이 규정은 201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. 12.>

이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0.>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0. 11.>

이 규정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4. 4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7. 18.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5. 4.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대상) 신설 및 변경된 장학금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되 다자녀 도 장학금의 경우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연혁

- 제 정 제20호 (1996. 03. 02.)
- 일부개정 제28호 (1998. 02. 01.)
- 일부개정 제49호 (1999. 10. 26.)
- 일부개정 제50호 (2000. 01. 08.)
- 일부개정 제57호 (2000. 06. 07.)
- 일부개정 제2001-18호 (2001. 01. 20.)
- 일부개정 제2002-5호 (2002. 09. 25.)
- 일부개정 제2004-23호 (2004. 07. 19.)

- 일부개정 제2005-1호 (2005. 01. 19.)
- 일부개정 제2005-9호 (2005. 02. 25.)
- 일부개정 제2005-44호 (2005. 05. 02.)
- 일부개정 제2006-1호 (2006. 06. 20.)
- 일부개정 제2008-3호 (2008. 04. 14.)
- 일부개정 제2008-4호 (2008. 07. 03.)
- 일부개정 제2009-1호 (2009. 02. 25.)
- 일부개정 제2009-2호 (2009. 05. 14.)
- 일부개정 제2011-5호 (2011. 04. 06.)
- 일부개정 제2011-27호 (2011. 11. 29.)
- 일부개정 제2012-6호 (2012. 07. 11.)
- 일부개정 제2012-9호 (2012. 12. 12.)
- 일부개정 제2013-11호 (2013. 03. 19.)
- 일부개정 제2014-12호 (2014. 02. 25.)
- 일부개정 제2014-28호 (2014. 07. 11.)
- 일부개정 제2015-27호 (2015. 08. 11.)
- 전부개정 제2016-3호 (2016. 01. 12.)
- 일부개정 제2016-25호 (2016. 09. 20.)
- 일부개정 제2016-32호 (2016. 10. 11.)
- 일부개정 제2017-6호 (2017. 04. 04.)
- 일부개정 제2017-10호 (2017. 07. 18.)
- 일부개정 제2018-7호 (2018. 05. 04.)

[별표 1] 《교내장학 종류 및 선발기준》 <개정 2016. 10. 11., 2017. 3. 31, 2018. 5. 4.>

구분	장 학 종 류	선 발 대 상		1인당 지급액	
등록금 지원장학  (등록금 범위내 지원)	입학성적우수 장학	학과수석		수업료 전액	
		학과 2위		수업료 80% 이내	
		학과 3위		수업료 70% 이내	
	재학성적우수 장학	학과수석		수업료 전액	
		학과 2위		수업료 80% 이내	
		학과 3위		수업료 70% 이내	
	성적우등(성적 10%이내 자)		수업료 50% 이내		
	성 적 향 상 장 학		평균평점 3.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.0 이상 향상자		수업료 30% 이내
	복 지 장 학	A	기초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 중 학과장 추천자		수업료 70% 이내
		B	사회적 약자계층 가정 대상자 중 학과장 추천자		수업료 50% 이내
	보 훈 장 학		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(평균평점 2.0이상)		등록금 전액
	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장학		북한이탈자 중 본 대학 재학생		등록금 전액
다자녀도 장학		최근 3개월 이내 도내 주민등록된 다자녀(3자녀) 이상 가정의 자녀 단,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자녀가 3자녀인 자		등록금 전액	
만 학 도 장 학		만 35세 이상 재학생중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자 단, 입학후 첫학기는 성적기준 적용안함		수업료 50%	
생활비 지원  (등록금 초과지원 가능)	동문가족 장학	A	본 대학에 부부, 부모, 자녀 등 2촌 이내 구성원이 동시에 재학중인 자 중 1인	30만원	
		B	본 대학을 졸업한 부부, 부모, 자녀 등 2촌 이내 구성원이 재학중인자	10만원	
	한마음 장학	A	재학생 본인이 1~3등급 장애자		50만원
		B	학부형이 1~3등급 장애자		30만원
		C	재학생 본인이 4~6등급 장애자		20만원
	공로 장학	총학생회	총학생회장		수업료 전액
			수석부회장		수업료 70%
			차석부회장		50만원
			상임집행위원, 집행위원회 부장, 동아리 연합회장, 총학생회장 권한대행		40만원
		대의원회	대의원회 의장		수업료 70%
			학과대표		40만원
			반대표		30만원
	미디어센터	보도부장, 편집장		35만원	
		방송국원, 학생기자 중 활동실적에 따른 미디어주간 추천자		25만원	
	경진대회(교외)	A	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본상 1순위 입상자		1인(단체) 50만원
B		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본상 3순위이내 입상자		1인(단체) 30만원	
C		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입상자중 분야별 성적상위 30% 이내 학과장 추천자		1인(단체) 20만원	
경 상 남 도 근 로 장 학	학과 및 부서 업무보조		시간당 8천원		
	학사도우미(단기)		1일 4만원		
	사회봉사도우미		시간당 3천원		
자격증취득 장학		[별표 2] 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		20~30만원	
자연재해지원 장학		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자		100만원	
신문고 장학		보호자 실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가계곤란자		100만원	
꿈 드림 장학		국가장학 신청자 중 성적기준 미달자(평균평점 2.0이상)		10만원~25만원	
열정입학 장학		만학도(만 35세 이상) 및 기초생활수급자		50만원	
다문화가정 장학		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		30만원	

[별표 2] 《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》 <개정 2018. 5. 4.>

구 분	인 정 기 준		지급금액
전공 및 직무관련	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(고용노동부) [별표 2]에 해당하는 전공관련 자격증 중 기술·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시		30만원
어학 관련	일반교양 과목 적용	어학전공 학과 적용	20만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TOEIC 550점 이상</li> <li>· JPT 415점 이상</li> <li>· JLPT 신N4 이상</li> <li>· 新CPT 350점 이상</li> <li>· 新HSK 3급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TOEIC 580점 이상</li> <li>· JPT 500점 이상</li> <li>· JLPT 신N4 이상</li> <li>· 新CPT 400점 이상</li> <li>· 新HSK 3급 이상</li> </ul>	



[별지 제1호 서식]

# 장 학생 추천서

[ 학과 / 부서 : ]

장학종류	학과/부서	학번	학년	성명	성적 (4.5만점)	추천사유	지급계좌	연락처

위와 같이 장학생을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학과(부서)장

(서명)

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귀하

※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인정함.



[별지 제3호 서식]

NO. 장학 -

## 장학금 지급 통지서

학 과 :

학 번 :

성 명 :

장학종류 :

위 학생은 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사전감면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

NO. 장학 -

## 장 학 증 서

학 과 :

학 번 :

성 명 :

장학종류 :

위 학생은 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과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.

년 월 일

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